



의안번호	제 2019 - 7호
의 결 연 월 일	2019. 1. 14. (제92차 회의)

의  
결  
안  
건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의 건

제 출 자	상임위원
-------	------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1. 의결주문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및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전문위원의 임기 등) ①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자문위원의 임기 등)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2019. 1. 14.)

이 규정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제안이유

양형위원회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두고 있고,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운영규정 제23조 및 제28조가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질적인 연임절차 진행을 도모함.

### 3. 주요내용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및 제28조를 개정하여 전문위원과 자  
문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